

Regulatory Framework by the Size of Listed Companies and Corporate Growth

상장회사의 규모별 규제 현황과 기업성장

제17회 법경제연구회 발표

2024. 10. 04.

자유기업원



차례

1. 서론

2. 상법상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2.1. 상장회사 규제 개관

2.2. 자산총액 기준

2.3. 자본금 기준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1. 미국

3.2. 영국

3.3. 프랑스

3.4. 독일

3.5. 일본

4.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4.1. 현행법상의 문제점

4.2. 개선방향

5. 결론



1. 서론



1. 서론

연구의 목적

- 현재 우리나라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금융사지배구조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 특히,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규모를 1천억원, 3천억원, 5천억원, 2조원으로 세분하여 단계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문제는 지나친 대기업 차별 규제로 기업 규모화로 인한 이점 향유의 유인보다 규제회피를 위한 동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기업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현저하게 적은 편인데,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권(34위)을 기록한 바 있다.



1. 서론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당면 과제 중 하나로는 기업 규모화 확대를 통한 '대기업 비중의 양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상기 언급한 기업규모에 따른 각종 규제 항목들의 단계적인 확대로 인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대규모 기업으로의 성장을 자발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본 발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법의 상장회사 관련 규정상 기업 규모별로 어떠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그리고 이러한 상장회사의 규모별 규제 현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상장회사 규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해당 규제체제를 조사·검토하여 입법적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2. 상법상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2.1. 상장회사 규제 개관

2.2. 자산총액 기준

2.3. 자본금 기준



Commercial Act of Korea

2. 상법상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2.1. 상장회사 규제 개관

이원적 규제 체계



①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

➡ 상법 제3편 제4장(주식회사)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2 ~ 제542조의12)

② 상장회사의 재무구조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3편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 제165조의20)

2. 상법상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2.1. 상장회사 규제 개관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의 틀



-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체계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체계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자산총액에 따라 상장회사의 규제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자본금 기준에 의한 차등 규제를 실시한다.

<상법상 규모별 차등규제의 자산총액 기준>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	3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이상 ~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	-------------------------	-------------------------	------------------------	--------

2. 상법상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2.2.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 사외이사의 선임이 강제되며 그 결격사유도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규정을 두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제도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일반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다.



1,000억원 미만

2. 상법상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2.2.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는 반드시 두어야 하며, 감사를 두는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상근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특례감사위원회'로 국한된다.
- 상법상 상장회사는 감사 선임 시, 3% rule이 적용된다. 상장회사의 범위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3% rule은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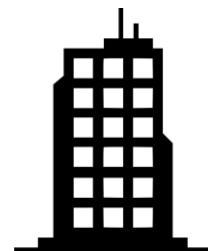


2. 상법상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2.2.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상법상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2.2.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즉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특례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한 1명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상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2.2. 자산총액 기준

상법상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구의 설치 비교



그룹 구분	규모별 감사기구 내용	
1그룹 비상장회사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	• 감사: 임의 설치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택 / 강제설치 • 감사 설치의 경우: 비상근감사도 설치가능
2그룹 소규모 상장회사	자산 총액 1천억원 미만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택 / 강제설치 • 감사 설치의 경우: 비상근감사도 설치가능 • 감사위원회 설치의 경우: 일반 또는 특례감사위원회 중 선택
3그룹 중규모 상장회사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택 / 강제설치 • 감사 설치의 경우: 반드시 상근감사 설치(비상근감사 설치 불가) • 감사위원회 설치의 경우: 특례감사위원회 강제 설치
4그룹 대규모 상장회사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택불가(감사위원회 강제설치) • 감사 설치 불가 • 특례감사위원회 강제 설치

2. 상법상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2.3. 자본금 기준

자본금 1천억원 이상



-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 이사 등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대하여 회사법 일반규정이나 자본금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보다 행사 지분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감사·청산인의 해임청구권 및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25로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 소정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로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1. 미국

3.2. 영국

3.3. 프랑스

3.4. 독일

3.5. 일본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1. 미국



규제현황

- 미국 연방법 체제인 증권법, 증권거래법, SOX법 등의 연방법은 소규모 회사에 비해, 상장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또는 재무구조 규제는 행하고 있으나, 상장회사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차등규제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 증권거래법에서는 회사의 주식 등 증권이 SEC에 등록된 회사를 '공개회사'라 하고, 회사 재무구조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 SOX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중 감사위원회 관련 규제와 기업재무상황에 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어 있다.
- 모범회사법(MBCA)상으로도 상장회사의 규모별 규제를 명시하지 않는다. DGCL이나 NYBCL 등의 주회사는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를 구분하여 별도의 규제를 취하고는 있으나,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나누어 별도의 규제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그 밖의 각주 회사법은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자율규제 방식의 사전적 경영통제를 지배구조 체제 확립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각 주마다 다르다.
- NYSE 상장규정에서는 일정한 지속상장요건 등을 정해 상장회사의 재무구조 규제를 실시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구조 규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NYSE 상장규정상으로도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른 차등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1. 미국



한국 · 미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비교표

한국		미국	
규모기준 (법령 · 규범)	규제 내용	규모기준 (법령 · 규범)	규제 내용
500억원 미만 (외감법)	· 소규모 기업 정기공시항목 일부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상장회사 (증권거래법, SOX법)	· 감사위원의 독립성 요건 강화 ·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체계 구축 · 유가증권보고서(Form 10-K) 제출의무 · 연차보고서상의 인증강화 · SEC 기준에 따른 기업재무보고서 · 지배주주, 이사, 임원 등의 지분변동 사 · 행 공시 · 감사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 및 해임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 감사 · 위원회 승인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시 감 · 사위원회의 사전승인
500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상법, 외감법)	· 소규모 기업 정기공시항목 일부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1천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특례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3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특례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5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설치의무(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재무보고서 제출의무(※2026년부터 500억원 이상 상장사 적용) · 준법통제제도 도입 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NYSE 상장회사	· 상기 증권거래법 및 SOX법상의 상장회 · 사 규제 모두 포함 · 이사회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 · 독립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결격사유 · 해당시 독립성 결여 · 지명/기업재무보고서위원회 의무설치 · - 구성원 전원 독립이사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 -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 · - 감사위원 전원 독립이사 · -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은 회계 · · 재무전문가 · 감사위원회 구성원 · 보수위원회 의무설치 · - 구성원 전원 독립이사 · 주식거래 관련 중요사항 적시공시의무 · 신속공시항목 리스트 제시 · 기업재무보고서 가이드라인 채택 및 공시 · 기업행동윤리규범 채택 및 공시 · SEC 제출 연차보고서(Form10-K)의 · 이사회 승인
1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설치의무(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재무보고서 제출의무 · 준법통제제도 도입 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2조원 이상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특례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감사설치불가)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재무보고서 제출의무 · 준법통제제도 도입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 사외이사 3인 이상 / 이사 총수 · 수 구성 / 1인 이상 여성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 ·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 소수주주 집중투표 행사요건 완화 · 수시공시무기권 강화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2. 영국



규제현황

- 2006년 영국 회사법은 회사를 공개회사와 사회사로 구분하여 별도의 규제를 실시한다. 공개회사는 사회사와는 달리, 주식·사채 공모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업개시를 위해 영업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하는 등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있다.
- 회사법상의 상장회사란 해당 회사의 회계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일의 종료 직전에 보통주식 자본이, FSMA에서 정하는 공인상장명부에 등록되거나 EEA 국가에 상장되거나 NYSE 또는 NASDAQ 시장 중 어느 하나에서 거래가 승인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상장회사는 기업정보공시나 이사 보수 등에서 규제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영국 회사법상으로는 공개회사 또는 상장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차등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 영국의 2024년 Corporate Governance Code는 LSE 프리미엄 시장의 상장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comply or explain 기반의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제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2. 영국



영국 회사법상 회사 분류에 따른 규제

공개회사	상장회사	• 2000년 금융서비스 · 시장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인상장명부'에 등록된 경우 • EEA 국가에 공식적으로 상장된 경우, 또는 • NYSE 또는 NASDAQ 중 어느 하나에서 거래가 승인된 경우
	비상장회사	• 상장회사가 아닌 공개회사
사회사	소규모 회사	• 자산총액 £3,260,000 이하 • 매출액 £6,500,000 이하 • 근로자수 50인 이하
	중규모 회사	• 자산총액 £12,900,000 이하 • 매출액 £25,900,000 이하 • 근로자수 250인 이하
	대규모 회사	• 중규모 기준 초과 회사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2. 영국



한국 · 영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비교표

한국		영국	
규모기준 (법령 · 규범)	규제 내용	규모기준 (법령 · 규범)	규제 내용
500억원 미만 (외감법)	· 소규모 기업 정가공시항목 일부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공개회사 (회사법)	· 주식 · 사채 공모 가능 · 행정당국의 영업증명서 없이 사업개시 불가
500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상법, 외감법)	· 소규모 기업 정가공시항목 일부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이사는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 · 포괄적 선임결의 의안 금지 · 회사와 이사 등 간의 대출, 준대출, 신용 거래 금지
1천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특례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회계기준일 다음날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연차총회로 주주총회 개최 필요 · 주주총회의 서면결의 인정 안됨 · 주주총회에 대한 연차개산서류 제출의무
3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특례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회계감사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 · 1인 이상의 총무 의무 설치 · 순자산이 주식자본금의 2분의 1 이하로 되는 경우 임시주총 개최필요 · 이익분배가능 이익 또는신주발행 납입금 이외의 것으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상환 금지
5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1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설치의무(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2조원 이상 ~ 5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5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특례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감사설치불가)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 · 준법통제제도 도입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 사외이사 3인 이상 / 이사 총수 과반 수 구성 / 1인 이상 여성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 ·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 소수주주 집중투표 행사요건 완화 · 수시공시의무기간 강화
		상장회사 (회사법 및 CG코드)	
		· 1주1의결권에 관한 주주총회 투표결과 공시 · 소수주주의 독립보고서 제출요청권 · 매 사업연도, 전략보고서 작성 이외에 주요 상황, 요인, ESG 정보 등에 관한 설명 · 작성의무가 추가적으로 부과 · 이사회 구성시 과반수는 독립비업무집행 이사로 구성 · 독립비업무집행이사의 독립성 요건 강화 · 감사위원회 설치 - 3인 이상의 독립비업무집행이사로 구성 · 소규모 회사의 경우, 2인 이상 · 지명위원회 설치 · 구성원 과반수 독립비업무집행이사로 구성 · 보수위원회 설치 · 3인 이상의 독립비업무집행이사로 구성 · 소규모 회사의 경우, 2인 이상 · 이사회의 실효성 평가를 실시 · 공시 · 이사 및 임원 보수 사항 공시 · 재무 · 운영 · 준법통제 등의 모든 중요 내부통제사항 공시 · 1인 이상의 회계감사인 의무설치 - 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 선임 · 이사회 구성시 근로자대표 초빙 또는 근로자 담당 독립비업무집행이사 배치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3.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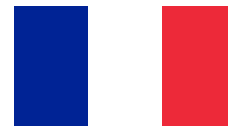
규제현황

- 프랑스 상법상 회사는 규모에 따라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상법상으로는 상장회사를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명시적인 차등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구분	내용
초소기업 (micro-entreprise)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다음 3가지 기준 중 최소 2가지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 ① 자산 총액: €450,000 (유로) ② 순 매출액: €900,000 (유로) ③ 연간 평균 고용인원: 10명
소기업 (petite entreprise)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다음 3가지 기준 중 최소 2가지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 ④ 자산 총액: €7,500,000 (유로) ⑤ 순 매출액: €15,000,000 (유로) ⑥ 연간 평균 고용인원: 50명
중기업 (moyenne entreprise)	중기업은 초소기업과 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다음 3가지 기준 중 최소 2가지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 ① 자산 총액: €25,000,000 (유로) ② 순 매출액: €50,000,000 (유로) ③ 연간 평균 고용인원: 250명
대기업 (grande entreprise)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다음 3가지 기준 중 최소 2가지를 초과하는 회사 ① 자산 총액: €25,000,000 (유로) ② 순 매출액: €50,000,000 (유로) ③ 연간 평균 고용인원: 250명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3. 프랑스



규제현황

- 프랑스 상법상 상장회사는 ① 일원적 기관구조와 ② 이원적 기관구조 중 하나를 기관설계 구조로 택할 수 있고, 모든 기관설계상 1인 이상의 회계감사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 일원적 기관구조는 대표이사가 대표집행임원을 겸하는 PDG유형과 그렇지 않은 non-PDG 유형으로 구분되며, 프랑스의 대부분 회사들은 PDG유형에 기반한 일원적 기관구조를 택하고 있다.
- 상법상의 상장회사는 근로자의 규모 및 주식보유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이사(또는 감사) 선임이 강제되고 있다. 또한 연결계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최소 2인 이상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 일원적 기관구조를 택한 상장회사의 경우, 근로자주주의 대표로 선임되는 '근로자주주 이사'와 근로자대표로서 선임되는 '근로자이사'로 유형이 구분된다. 근로자이사의 경우, 회사 규모별 요건에 따라 인원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이원적 기관구조를 택한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회를 구성하는 근로자감사가 동일한 취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상법 이외에 Afep-Medef 코드상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제가 이루어지나, 코드상으로는 명시적인 규모에 따른 차등규제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3. 프랑스



한국 · 프랑스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비교표

한국		프랑스	
규모기준 (법령 · 규범)	규제 내용	규모기준 (법령 · 규범)	규제 내용
500억원 미만 (외감법)	· 소규모 기업 정기공시항목 일부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① 자산총액 €2천5백만	· ①, ②, ③ 요건 중 최소 2가지 초과하지 않으면 중기업으로 재무구조상 규제 완화
500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상법, 외감법)	· 소규모 기업 정기공시항목 일부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② 매출액 €5천만	
1천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특례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③ 근로자수 250인 (상법)	· ①, ②, ③ 요건 중 최소 2가지 초과하는 회사는 대기업
3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특례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① 자산총액 €4백만 ② 매출액 €8백만 ③ 근로자수 50인 (상법)	· ①, ②, ③ 요건 중 최소 2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1인 이상의 회계감사인 의무 설치 · 연결계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최소 2인 이상의 회계감사인
5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설치의무(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2026년부터 500억원 이상 상장사 적용) · 준법통제제도 도입 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연속2회계연도 종료 시 근로자수 5000명 이상 회사* (상법)	· 이사회 구성원의 1인 이상은 근로자 대표로 선임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정원이 8명을 초과하는 경우 → 최소 2명의 근로자이사 선임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정원이 8명 이하인 경우 → 최소 1명의 근로자이사 선임 · 근로자이사 수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이사 선임은 근로자선거구에서 실시

1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설치의무(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 · 준법통제제도 도입 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상장회사 (상법 및 Afp-Medef 코드)	· 이사회 구성시 성별 다양성 확보 · 지배주주 없는 회사의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 · 지배주주 있는 회사의 이사회는 최소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 · 독립이사의 독립성 요건 강화 ·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 설치 · 이사회 평가는 최소 3년에 1회 · 영업연도상 이월 손실이 있는 경우, 일정액 법정준비금으로 할당 의무 · 이사 및 임원의 보수지급 산정방식 및 지급기준 방침에 대한 사전 투표 및 보수지급 승인에 대한 사후투표 의무 시행
2조원 이상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특례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감사설치불가)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 · 준법통제제도 도입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 사외이사 3인 이상 / 이사 총수 과반수 구성 / 1인 이상 여성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 ·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 소수주주 집중투표 행사요건 완화 · 수시공시 의무기준 강화		* 또는 본점 프랑스외, 근로자수 1만명 이상, 기업직원협의회 설치의무 회사도 해당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4. 독일



규제현황

- 독일 상법은 자본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자회사를 대규모 회사, 중규모 회사, 소규모 회사로 구분하고, 재무구조, 회계, 공시 등에 관한 차등규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결산검사인의 연차결산서 검사, 이사회 의사위기사항 관련 감독체계 수립의무, 감사회에 대한 이사회 연차결산서 제출의무, 이사회 연차결산서 등 공시의무 등이 부과된다.

구분	내용	
소규모 자본회사 (Kleine Kapitalgesellschaften)	다음 3가지 요건 중 2개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회사	
	자산총액	€7,500,000 (유로)
	매출액	12개월 간 €15,000,000 (유로)
	연 평균 고용인원	50인
중규모 자본회사 (Mittelgroße Kapitalgesellschaften)	다음 3가지 요건 중 2개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회사	
	자산총액	€25,000,000 (유로)
	매출액	12개월 간 €50,000,000 (유로)
	연 평균 고용인원	250인
대규모 자본회사 (Große Kapitalgesellschaften)	다음 3가지 요건 중 2개 요건을 초과하는 회사	
	자산총액	€25,000,000 (유로)
	매출액	12개월 간 €50,000,000 (유로)
	연 평균 고용인원	250인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4. 독일



규제현황

- 한편, 독일 주식법상으로는 주식회사 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회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유형적으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주식회사의 감사회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는 주주대표 감사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 근로자감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원수는 '3인'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3인을 초과하여 감사회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3의 배수가 되는 인원수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수가 2,000명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 감사회 구성원의 2분의 1을 근로자에서 선임해야 한다.
- 또한 주식법상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이사회 인원수를 차등규제하고 있는데, 300만 유로 이하의 회사는 이사회 구성원수를 적어도 1인 이상으로 하나, 300만 유로를 초과하는 회사는 최소 2인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을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독일기업지배구조코드(DCGK)에 의해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 독립이사의 독립성, 위원회,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제가 실시되나, 상장회사 규모에 따른 특별한 차등규제는 없다.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4.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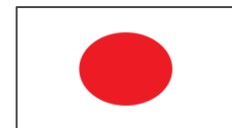
한국 · 독일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비교표

한국		독일	
규모기준 (법령·규범)	규제 내용	규모기준 (법령·규범)	규제 내용
500억원 미만 (외감법)	· 소규모 기업 정기공시항목 일부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① 자산총액 €2천5백만	· ①, ②, ③ 요건 중 2가지 초과하지 않으면 소기업 및 중기업으로 재무구조, 회계, 공시규제 완화
500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외감법)	· 소규모 기업 정기공시항목 일부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② 매출액 €5천만	· ①, ②, ③ 요건 중 2가지 초과하는 회사는 대기업에 해당 · 결산감사인인에 의한 연차결산서 감사필요 · 이사회의 회사위기사상 감독체계 수립의무
1천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특례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③ 근로자수 250인 (상법)	· 감사회 승인에 의한 연차결산서 및 상황보고서 확정 · 연차결산서, 상황보고서, 감사회보고서, 기타 관련 서류 등 전자연방공보에 공시할 의무
3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특례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독일 주식법 및 공동주주법상 근로자 경영참가	
5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설치의무(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2026년부터 500억원 이상 상장사 적용) · 준법통제제도 도입 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자본금 150만 유로 이하	· 감사회 구성원 9인
		자본금 150만 유로 초과	· 감사회 구성원 15인
		자본금 1,000만 유로 초과	· 감사회 구성원 21인
		근로자수 1,000명 이하	· 주주대표 6인 + 근로자대표 6인 = 12인의 구성원
		근로자수 2,000명 이하	· 주주대표 8인 + 근로자대표 8인 = 16인의 구성원
		근로자수 2,000명 초과	· 주주대표 10인 + 근로자대표 10인 = 20인의 구성원

1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설치의무(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 · 준법통제제도 도입 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상장회사 (주식법 및 DCGK)	· 회사 규모에 따른 근로자 경영참가 차등 규제 · 감사회 구성원수 3인(3인 초과시에는 3배수) · 근로자 수 2,000명 이상 회사는 감사회 구성원의 2분의 1을 근로자대표로 구성 · 회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주식법, 3분의 1 참가법, 공동결정법 등의 적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자감사의 구성 비율에 차이가 발생 · 2,000명 이상 회사에서, 이사회가 3명 이상인 경우, 적어도 1인의 여성 이사 와 1인의 남성 이사가 필요 · 독일 주식법상 감사의 자격요건 규제 · 감사회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가능 · 이사보수에 대한 감사회 승인 · 감사보수에 대한 정관규정 및 주주총회 승인 · 회사 규모에 따른 재무구조 및 회계규정 차등규제
2조원 이상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특례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감사설치불가)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 · 준법통제제도 도입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 사외이사 3인 이상 / 이사 총수 과반수 구성 / 1인 이상 여성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 ·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 소수주주 집중투표 행사요건 완화 · 수시공시 의무기준 강화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5.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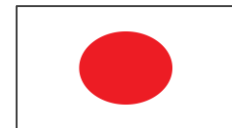


규제현황

- 일본 회사법은 주식양도제한이 없는 회사를 공개회사로 정의하여,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폐쇄회사)를 구분하고 있다. 회사법상 공개회사는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고 있고, 다양한 기관구조 설계 방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 공개회사 여부에 따라, 주주의 권리 내용, 회사의 기관 설계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즉 전주식양도제한회사는 공개회사보다 정관 자치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공개회사는 이사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고, 감사회,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회사법상 '대회사'는 자본금액이 5억엔 이상 또는 부채총액이 200억엔 이상인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대회사에 대응하여 실무에서는 중소회사(中小会社) 또는 비대회사(非大会社)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 용어는 아니며, 회사법에서도 중회사 또는 소회사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 공개회사는 아니지만 대회사인 경우(비공개대회사), 회계감사인 설치의무, 내부통제시스템 결정의무, 손익 계산서 공고 의무, 청산시 감사 설치의무가 있다. 공개회사인 대회사의 경우(공개대회사), 사외이사 설치의무, 감사회 설치의무, 이사 개인별 보수 등에 관한 방침 결정의무, 연결계산서류 작성의무가 있다.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5.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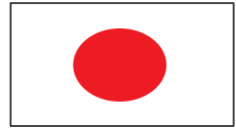


규제현황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거래소에 그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를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라고 칭한다. 상장회사는 거래소 규칙에 의해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감사회, 감사등위원회 또는 지명위원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야만 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기업정보공시규제, 공개매수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위임장권유규제, 금융상품거래소규제 등이 이루어진다.
- 그러나 회사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은 우리나라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처럼 회사의 규모를 세분화하여 각각 다른 지배구조 · 재무구조 규제를 취하지는 않는다.
- 그 밖에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규정과 CG코드상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공시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3. 주요국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검토

3.5. 일본



한국 · 일본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 비교표

한국		일본	
규모기준 (법령 · 규범)	규제 내용	규모기준 (법령 · 규범)	규제 내용
500억원 미만 (외감법)	· 소규모 기업 정가공시항목 일부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공개회사 (회사법)	· 이사회 설치 의무 · 회사의 기관설계를 감사회,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 감사 설치의무 · 이사 등의 자격 요건 규제 · 발행가능주식 총수 제한 · 종류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 감사 선임이 불가능 · 잉여금 배당 · 의결권 등에 주주별 다른 취급 불가 ·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수 제한 · 자동적 주권의 발행 · 교부 의무 ·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적용불가 · 모집주식 발행 등의 모집사항 이사회가 결정가능 · 소수주주권 · 단독주주권 행사요건 가중 · 주주총회의 소집기간이 확대 · 조직재편행위에 대해 특별결의 필요 · 임원 임기 연장불가 · 청산 중 감사 설치의무
500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상법, 외감법)	· 소규모 기업 정가공시항목 일부 생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1천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특례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3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의무설치(감사설치시) · 특례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5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설치의무(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2026년부터 500억원 이상 상장사 적용) · 준법통제제도 도입 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1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감사 · 감사위원회: 선택(의무설치) · 상근감사 설치의무(감사설치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 · 준법통제제도 도입 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자본금 5억원 이상 or 부채 200억원 이상 (회사법)	· 회사법상 대회사에 해당 · 회계감사인 설치의무 · 내부통제시스템 결정의무 · 손익계산서 공고 의무 · 청산시 감사 설치 의무
		공개회사 + 대회사 (회사법)	· 회사법상 공개대회사에 해당 · 사외이사 설치 의무 · 감사회 설치 의무 · 이사의 개인별 보수 등에 관한 방침 결정의무 · 연결계산서류의 작성의무
2조원 이상 (상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특례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감사설치불가)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한도 축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 · 준법통제제도 도입의무 ·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 · 사외이사 3인 이상 / 이사 총수 과반수 구성 / 1인 이상 여성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 ·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 소수주주 집중투표 행사요건 완화 · 수시공시 의무기준 강화	상장회사 (금상법 및 CG코드)	· 기업정보 공시규제 · 공개매수규제 · 대량보유보고 규제 · 금융상품거래소 규제 · 불공정거래 규제 · 위임장권유 규제 · 기업지배구조 또는 기업행동에 대한규율 기능강화 · 최소 1인 이상의 독립사외이사 설치 · 독립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강화 · 감사의 전문성 강화 · 임원보수 공시규제

4.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4.1. 현행법상의 문제점

4.2. 개선방향



4.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4.1. 현행법상의 문제점

규모별 차등규제



Global Standards

- 우리나라 상법은 상장회사의 규모를 1천억원, 3천억원, 5천억원, 2조원을 기점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는 상장회사를 규모별로 나누어 차등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회사를 회사 관련법상 구분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회사법상 대회사를 법률상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회사 자체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 이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상법상 상장회사의 규모별 차등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내지 국제적 입법 조류에는 부합하지 않는 특유한 규제체계로 볼 수도 있다.

4.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4.1. 현행법상의 문제점

규모별 차등규제

- 상장회사의 규모별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의 규모화 저해' 또는 '기업의 성장 저해'에 있다.
- 이는 중소기업들이 광범위한 규제를 이유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회피하는 이른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Corporate Peter Pan Syndrome)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세분화된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는,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부장산업이나 미래산업 분야의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희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4.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4.1. 현행법상의 문제점

규모 기준의 타당성

- 상법상 상장회사를 자산총액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리 구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에 맞추어 단계적인 규제를 가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도 이러한 회사의 자산총액 규모 기준에 따라 기업공시항목의 차등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 문제는 구체적인 자산총액 내지는 자본금을 규모별로 가르는 기준이 우리 법제상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과 그 기준의 타당성 내지 적정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 자산총액 5천억원 또는 2조원 등의 일정 규모를 초과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업의 '재무구조'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지배구조' 규제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연계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
- 상법의 규제체계를 보면, 예컨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은 법률적으로 이러 이러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만, 자산규모와 지배구조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로 규율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4.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4.1. 현행법상의 문제점



법령의 광범위한 원용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공시규정 등은 상법의 자산총액 2조원 기준이 설정되어, 상법상의 '2조원'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또는 재무구조에 관한 공시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부회계운영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은 자율규제 규범들에서도 상법상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에 해당하는 공시항목들이 그대로 열거되고 있다.
-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회사법이나 금융관련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규모별 규제를 행하지 않고 규제체계의 일정한 기본원칙만을 정하고, 그 밖에는 상장규정이나 CG코드와 같은 자율규범에서 공시규제를 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독일과 프랑스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세분화된 규제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범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된 기준을 자율규범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원용'함으로써 수법자에게 중복규제 또는 이중규제의 부담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4.2. 개선방향

규모별 규제의 폐지

- 현행 상법상의 세분화된 규모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규모별 차등규제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상법상의 기업 규모별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주요국의 법제를 보면, 상장회사에 대해 세분화된 규모별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사회·경제적인 인식과 함께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상법 및 관련법상의 규모별 차등규제 철폐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 기업의 고용창출 확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동해 가는 성장 루트가 중요한데, 여기에 기업 규모화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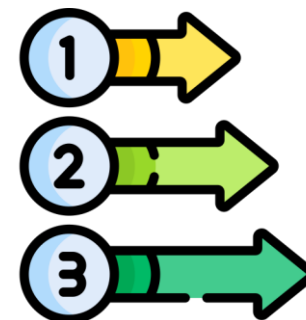
Repeal

4.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4.2. 개선방향

단계별 규제의 완화

- 상법의 규제 체계를 보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항목이 추가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소유구조 · 지배구조 · 재무구조 관련 상법상의 각 규제사항들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요건이 강화되는 등 지배구조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마다 규제가 가중되고 있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러한 단계별 규제확대 체계야말로 기업 성장을 가장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규제항목의 단계적 확대를 점진적으로 완화 ·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에 관한 일정한 규제 원칙만을 정함으로써 규제체계의 방향을 사적 단체들의 자율적 규제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4.2. 개선방향

자율규제의 확대



- 기업의 영업분야가 제조업인지 금융업인지 IT기술분야인지, 각 분야에 맞는 기업규제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을 법령상의 일률 규제로 기대할 수는 없다.
- 우리나라는 상법상 정해진 기준에 근거해 거래소 등이 이를 공시규정에 수용하여 규율하는 방식으로, 엄밀하게 보면, 법령에 의해 강제된(mandated) 자율규제로, 형식만 자율규제를 취할 뿐 엄밀한 의미의 자율규제를 널리 행하는 국가라 할 수 없다.
- 특히, 일률적인 상법의 규모별 규제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나 기업지배구조연구원 등 각종 민간단체의 자율규제 규범들이 상법 조항을 광범위하게 원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상장회사의 공시강화 기조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범자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법과 각종 타법령 및 그 밖의 자율규제규범에서 일종의 지표화된 규제항목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원용되고 있는 현실은 기업에 대한 이중삼중의 규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중복규제의 대응을 위해 기업의 '비용 증대'라는 저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 자율규제의 특징은 제도의 타당성 판단이 시장의 규율에 맡겨진다는 것으로, 제도 자체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즉, 자율규제의 핵심인 '일괄 규율'(one size fits all)의 배제를 통한 기업별 유연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기대효과

- 상법상 규모별 차등규제가 폐지되거나 단계별 규제가 완화되어 궁극적으로 상장회사 규제가 자율규제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 상법상의 규모별 규제를 완화하여 궁극적인 차등규제 철폐가 실시되는 경우,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업 규모화 추진에 따라 대기업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상법상 단계적 가중 형태의 상장회사 규제를 완화하여 종국적인 폐지방향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 상장사들의 이중규제 내지 중복규제의 부담을 감소시켜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3) 상장회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상장회사에게는 소유·지배·재무구조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재량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